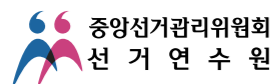


만 18세,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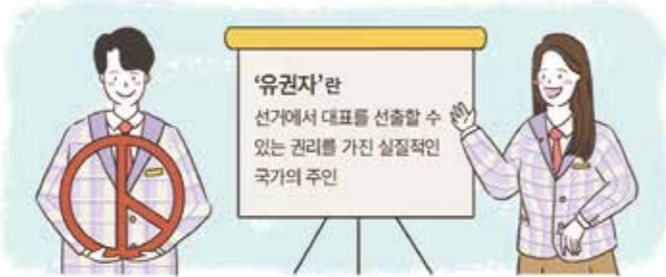
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, 즉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도 '선거권자'입니다.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보세요!



I 18세,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!

■ 유권자의 의미

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.



* 선거권 연령 기준

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. 즉,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(4월 16일 포함)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유권자의 교양

 정치·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	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
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대한 토론, 주장, 설득 능력	 참여와 실천

■ 투표로 만드는 세상

'나 하나쯤이야'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,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결정할지 모릅니다.



투표 참여를 단지 선택할 권리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'우리의 목소리 내기'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

II 선거, 어렵지 않아요!

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

선거일	선거가능 나이
대통령선거 2022. 3. 9. 임기 5년	만 18세
국회의원선거 2020. 4. 15. 임기 4년	
지방선거 [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원, 교육감] 2022. 6. 1. 임기 4년	

■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



■ 투표, 이렇게 합니다!

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,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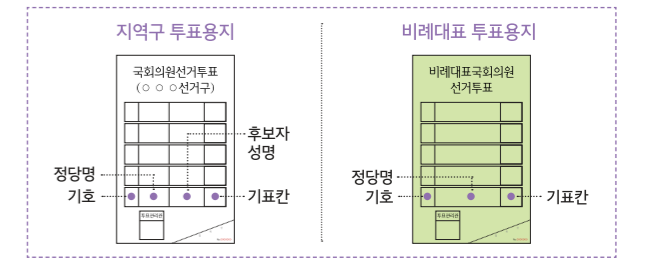


※ 신분증은 꼭 지참하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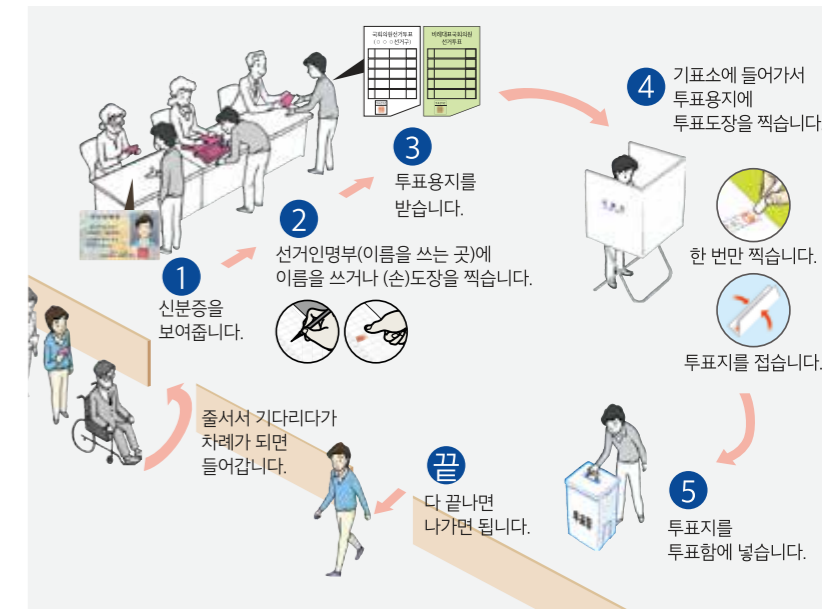
·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, 사진이 첨부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	·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, 자격증, 학생증(사립학교 학생증 포함)	

■ 투표용지

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,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합니다.



■ 투표하는 방법



■ 올바른 투표방법

 반드시 투표전용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.	 펜이나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.
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.	 투표도장을 여러번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 투표도장을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.	 투표도장을 네모 칸 밖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.
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	

■ 사전투표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(4월 10, 11일 /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) 동안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관내선거인	관외선거인
해당 구·시·군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	해당 구·시·군 위원회 관할 구역 밖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

■ 불법 선거운동

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

특정지역·지역인에 대해 인터넷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

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목록을 게시

■ 정당·후보자 분석

각 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
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

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
같은 공약 차이점 찾아보기

관심 공약 친구들과 토론하기
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

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
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 매겨보기

정당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

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반복되고 있는지 살펴보기

■ 납세, 병역, 학력 등 후보자 정보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nec.go.kr)

<p>후보자가 보유한 현금, 채권, 부동산 등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.</p>	<p>후보자 본인의 국내(최종) 정규학력과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.</p>
<p>후보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병역사항 및 이를 증명·확인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요.</p>	<p>후보자의 본인과 직계가족이 최근 5년간 납부 또는 체납한 소득세,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.</p>
<p>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.</p>	<p>위 후보자 정보는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.</p>

■ 투표참여 캠페인

할 수 있는 것

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

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

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

할 수 없는 것

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

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

확성기나 인체를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

■ 인터넷, SNS 그리고 가짜뉴스 주의점

비난과 욕설

극단적 표현과 평가

근거 없는 의혹 제기

출처 없는 임의적인 내용

■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현상

정보왜곡

편향성

거짓사실 확대 재생산

왜곡 메시지 오용 및 악용

III 선거운동,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

■ 선거운동이란

당선되거나 당선되지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
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

정당, 후보자, 후보자 가족, 선거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YES!

단, 공무원, 교사는 NO!

18세 이상 선거운동 YES!

18세 미만 선거운동 NO!

■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

법정 선거운동기간	평상시
<p>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.</p>	<p>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.</p>
<p>집회, 모임에 이르지 않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.</p>	<p>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 사이트를 올린다.</p>
<p>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.</p>	<p>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를 통해 리트윗, 공유의 방법으로 전달한다.</p>
<p>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.</p>	<p>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올린다.</p>

IV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!

■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!

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!

이 후보자가 괜찮아!

OO정당을 선택해

선생님

부모님

■ 선거정보 알아보기

<p>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</p>	<p>선거정보 둘러보기</p>
<p>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검색하기 http://policy.nec.go.kr</p>	<p>정당·후보자 선거공보 읽어보기</p>
<p>TV토론 시청하기</p>	<p>사이버 선거역사관 가상 선거체험</p>

- Q 선거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?
- 아닙니다. 선거운동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도 학급 친구들과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,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어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은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Q 내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나요?
- 선거운동기간(4월 2일부터 14일까지)에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.
-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유튜브,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- Q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? 기숙사에서는요?
- 학교의 교실은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'호'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.
- Q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배지를 부착하거나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있나요?
- 특정 정당,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·착용할 수 없습니다.
- Q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도 위반행위인가요?
- 평소처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, 그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식사를 사준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정중히 거절합니다.
- Q 학교 동아리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약을 듣거나 궁금한 점을 물어봐도 될까요?
- 동아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후보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.
- Q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?
-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,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기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.
- Q 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이나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?
- 물론 가능합니다.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 하겠죠.